아름다운 행복한 시 인

제2019-219호 2019년 11월 22일(금) 人



보

시정지표

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

■ 발행인: 여수시장 ■ 발행소: 공보담당관실 /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 ☎ 659-3025 FAX) 659-5803

고 시

공 고

0 여쉬 공고

O 여수시 공고 제2019-2810호 사업자등록 폐업자 영업신고사항 작권말소 예정사실 공고

제2019-2811호 도로지정 공고(화양면 이천리 464-2 외)

3

회				
람				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

여수시 공고 제2019 - 2810호

사업자등록 폐업자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시실 공고

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「식품위생법」제37조(영업허가 등)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고합니다.

2019년 11월 22일

여 수 시 장

1. 제 목 :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

2. 처분내용 :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(예정일자 : 2019. 12. 9.)

3. 법적근거 :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

4. 공고기간 : 2019. 11. 22. ~ 2019. 12. 6.(15일간)

5. 공고내용

업종명	업소명	대표자	영업장 소재지	사업자등록 폐업일	처분내용
일반 음식점	짜장생각	배*경	여수시 학동서1길 13 (학동)	2019.06.05	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

6. 유의사항

-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2019년 12 월 6일까지 정당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.
- 직권 말소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7. 문 의 처 : 여수시보건소 식품위생과 위생지도팀 ☎ 061)659-4228

[여수시 공고 제2019 - 2815호]

도로지정 공고

여수시 화양면 이천리 464-2번지 외 2필지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,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·공고합니다.

1. 도로지정 공고 내역

도 로 위 치	도로길이 (m)	도로너비 (m)	도로면적 (m²)	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	비고
계	51.95	5	276		
화양면 이천리 464번지	43.95	5	230	도로대장 참조 (허가민원과 비치)	
화양면 이천리 464-3번지	8.0	5	46		

2. 관련도서 : 생략(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)

3. 기타사항

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(061-659-411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19. 11. 22.

여 수 시 장